





# 남아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 역할과 임무에 관한 1차 보고서

IPECK's First Report on the Roles & Function of the South African TRC

김현경(연구소, 자문위원)

## 1. 목적과 범위

과거 청산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규명이라기 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런 면에서 철저히 규명할수록 미래는 밝아 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4월 혁명이 직후 반민족자 처벌 특별위원회 설치와, 5공청문회라는 제도 정치권 중심의 과거 청산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 또는 진보 진영이 정치적 세력으로 포괄되지 못한 까닭에 근본적인 청산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하고, 군부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도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민중적 요구에 의해서 전노 재판 시작, 이후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

따라서 진보세력을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들에게는 과거 청산에 대해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더 이론화하여 하나의 지침으로 삼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인적,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남아공부터 다루고자 한다. 아르헨티나 등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한다.

이번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관한 보고서는 지난 9월부터 1인이 중심이 되어 작성했으며,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남아공화국은 지난 94년 역사적인 흑백 자유총선을 통해 350년간 지속되어 온 소수백인통치를 종식시켰다. 다수 흑인에 대한 소수 백인의 지배는 인종 차별과 종족간 유혈 충돌로 얼룩진 피의 역사를 불러왔다. 이제 새로운 헌정체제 아래 평등과 민주 사회로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남아공은 국가 재건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싸우면서 폭력과 유혈로 얼룩진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와 겨루고 있다.

80년대 군부독재 하의 광주 민중 항쟁이라는 유혈 충돌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남아공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공 정부와 국민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끈질긴 반 인종 차별 투쟁의 전통 만큼이나 철저했던 만큼,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과거의 질곡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반성과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남아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를 간략히 살펴 보고,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True and Conciliation Committee)의 역할과 임무를 개관하고, 이후 2단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TRC가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법적인 검토에 집중하려고 한다. 특히 TRC를 둘러싼 갖가지 비판과 지지의 내용과 그 세력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제2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인종, 계급별로 뚜렷한 정치세력을 갖고 있는 남아공 사회에서 TRC의 활동이 적절한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정치 세력 간의 역관계 문제는 제외했다.

## 2.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은 공식적으로 지난 48년 백인 정당인 국민당의 집권으로 등장했다가 94년 4월 다인종 참여 총선을 계기로 역사에서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남아공의 흑백 차별은 사실상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희망봉에 도착, 케이프타운에 식민기지를 건설한 17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 희망봉 도착, 백인 식민지 건설
- ▶ 1947년 국민당 집권 이후 공식화
  - 50년 <인종등록법> 제정 : 주민을 인종별로 분류해 등록
  - 59년 <반투자치촉진법> 제정 : 흑인들을 종족별로 분류, 홈랜드(흑인자치구)에 귀속
  - <통행법> 제정 ⇒ 샤프빌 학살
  - 76년 <소웨토 봉기>
- ▶ 36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 미국과 EU, 대남아공 경제제재 단행
- ▶ 39년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 취임
- ▶ 90년 데 클레르크, ANC를 비롯한 60개 이상 반정부단체 합법화.
  - 넬슨 만델라 ANC 의장 석방, 비상사태 해제
- ▶ 91년 <인종등록법> 폐지
  - 정부/ANC/17개 정치단체, 새헌법 협상 개시.
- ▶ 1992년 백인만의 선거 : 백인통치 종식 인정
- ▶ 93년 7월 잠정헌법안 채택 : 인종평등, 3권분립, 연방제 도입 골자.
  - 다인종 임시 행정위원회 구성
- ▶ 94년 4월 다인종 총선 실시

### 3.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 배경

#### 3.1 잠정헌법 제 200조

이 헌법은 분쟁, 갈등, 침묵에 가려진 고통, 불의로 대표되는 분열의 과거 사회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피부색, 인종, 계급, 종교, 성과 무관한 남아공화국 국민 전체의 평화로운 공존과 발전 기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건설될 미래 사회 간에 역사적 다리를 놓는다.

국가 화합과 남아공화국 국민 전체의 안녕의 추구는 남아공화국 국민과 사회 재건 간의 화해를 요구한다.

이 헌법의 채택으로 남아공화국 국민은 폭력, 갈등, 대물림의 증오, 공포, 죄, 복수의 나날 속에 무수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주의 행위를 양산했던 분열과 분쟁의 과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는다.

상기 내용은 복수가 아니라 이해의, 보복이 아니라 보상의, 회생이 아니라 ubuntu의 필요에 근거한다.

사회 통합과 국가재건을 이룩하기 위하여 과거 갈등 상황 하에 정치적 동기로 인해 비롯된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에 대하여 사면을 행한다. 이 헌법 하에서 의회는 1990년 10월 8일 이후, 1993년 12월 6일 이전에 사면 종료일을 결정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사면에 필요한 절차, 기준, 진행 방식,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를 포함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이 법률이 통과된 후 각 조항에 따라 어느 때라도 사면을 행한다.

이 헌법과 공약을 통해 우리 남아공화국 국민은 역사의 새 장을 연다.

#### 3.2 국제 인권 규약



국제 인권 규약은 새로 수립된 모든 정부에서 과거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 진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식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고,
- ▶ 가해자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 ▶ 범죄 계획자, 가해자, 희생자의 신분과 더불어 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1995년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Bill)은 잠정 헌법의 요구와 국제 인권의 요구를 결합하여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의 목표는 위원회에 위임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활동은 1)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2)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에 대한 사면 허가 3)희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보상 조치의 권고이다.

### 3.3 구 사면법의 폐지

구 사면법은 1995년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러나 구 사면법 하에서 행해진 사면은 잠정적 효력을 지니며 이 법률에 의해 주어진 사면은 위원회 설립 이후 12개월간 효력을 지닌다.

## 4.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의 기본정신

의회 안팎에서 이루어진 오랜 기간에 걸친 토론과 논쟁 끝에 마침내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1993년 잠정헌법의 마지막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나는 의회로 가서 사면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 희생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효과적인 배상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사면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상처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나는 ANC와 PAC의 상처를 구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화국 국민들이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답하려고 한다. 다행히 우리는 남아공화국의 진정한 화해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종적 성적 차별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에 참여했던 인물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인권 유린에 관계된 진실이 묵인되거나 간단히 잊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우리들 다수는 이 신념을 지지한다. 진실은 조사, 기록되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을 지지한다. 민주주의 정부는 우리 나라의 인권 문화 건설을 지지한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절연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용서하되 잊지 않고 인권 존중에 기초한 미래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남아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있어서의 새로운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은 정부나 국가가 애국 시민에게 베푸는 호의로 대물림되는 선물이 아니다. 인권은 모든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다. 이 권리에 대한 모두의 책임감을 통해 인권의 길을 밝히고 그 길을 앞당기며 과도기를 건너는 우리 사회에 국제 경험에 기초한 표지나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험과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인권이 소수에게 물려지는 유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타고난 권리임을 확인하는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출발하여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미래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마녀 사냥이나 인권 유린자들을 법정에서 끌어내어 기소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아공화국 국민이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과거와 화해하고 화해의 명분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진실의 추구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진실이 없이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 (법무 장관 둘라 오마르(Dullah Omar))

## 5.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 5.1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의 목표

위원회의 목표는 지난 시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국가적 통합과 화해를 이룩하는 것이다.

- ▶ 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여 1960년 3월 1일부터 법률에 명기된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자행된 반인권적 폭력의 원인, 성격, 정도를 그 희생자의 관점뿐 아니라 폭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동기와 관점, 그리고 폭력의 전례, 정황, 요인, 문맥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완전히 밝힌다.
- ▶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와 법률(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의 조항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사실을 전면 폭로하는 자들에게 사면을 행한다.
- ▶ 희생자의 운명과 행방을 알리고 희생자가 당한 폭력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각에 맞는 배상책을 마련하여 희생자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을 회복시킨다.
- ▶ 이후의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들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 5.2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 ▶ 다음의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발의, 조정, 조사한다:
  - 조직적 학대를 포함한 반인권적 폭력 사례
  - 위의 폭력을 유도한 전례, 정황, 요인, 문맥, 동기와 관점을 포함하여 반인권적 행위의 성격과 원인, 정도
  - 위의 폭력에 개입한 모든 사람과 공공기관, 제도의 정체
  - 위의 폭력이 국가 또는 이전 정부나 정부 조직이나 정치 조직의 의도적 계획의 일부로 비롯된 것인가의 문제
  - 위의 폭력에 대한 정치적 혹은 기타의 책임성
- ▶ 폭력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희생자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증거 접수의 통로를 제공하고, 이를 발의, 조정한다. 폭력 희생자의 신원과 증적을 밝혀내고 희생자의 행방 및 그들이 당한 위해의 성질과 정도를 밝혀낸다.
- ▶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모든 연관 사실을 전면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에 대한 사면 허가를 적용하며 이 적용을 사면 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보를 통해 사면 허가 결정을 발표하여 정치적 동기에 의한 가해 행위의 사면 허가를 촉진한다.
- ▶ 반인권적 폭력 또는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행동을 은폐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앤 문건을 조사한다.
- ▶ 사실적, 객관적 정보와 이 정보에 의거해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내용 착수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다.



▶다음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이후 희생자들의 배상 문제에 관해 마련해야 할 정책이나 희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희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잠정적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법안의 목표를 위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을 장관에게 권고한다.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제도의 창출과 인권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제도적, 행정적, 법적 조치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 5.3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대통령과 내각의 상의 하에 임명된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내각과 상의하여 위원들을 임명한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갖지 않은 자라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아닌 자의 위원 임명은 2명 이하로 한다.

▶대통령은 임명 위원을 정부 관보에 발표한다.

▶대통령은 위원 가운데 1인을 의장으로, 다른 1인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법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은 위원회의 존속 기간 동안 위원직을 준수한다.

▶위원들은 어느 때라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부정 행위나 무능을 근거로 위원회 전체의 결정과 국회 및 상원의 동의에 따라 특정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특정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위원직을 박탈당하거나 죽을 경우 대통령은 내각과 상의하여 위원회의 남은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빈 위원직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 5.4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구조

#### 5.4.1. 인권 침해 소위원회

인권 침해 소위원회(Committee of Human Rights Violations)는 본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와는 별도로 1960년 3월 1일부터 1995년 5월 9일간에 걸쳐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거나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석방 혹은 감형이 이루어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조사한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진실과 불만 내용을 기록한다.

또한 위원회는:

▶그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조직, 위원회, 개인들로부터 가혹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 또는 접수한다.

▶본 위원회의 기능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본 위원회에 자문을 행한다.

▶다른 두 소위원회나 하위 위원회 혹은 조사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위 활동과 그 밖의 특정 문제에 대해 소위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관한 잠정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 침해 소위원회는 법안 제6장과 제7장에서 본 위원회에 부여한 조사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는 본위원회의 권한, 기능, 의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본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종속된다는 내용과, 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소위원회의 권한, 기능, 의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종속되는 조사단의 설립이 뒤따른다.



5.4.2. 사면 소위원회

사면 소위원회(Committee on Amnesty)는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행위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전면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면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정부 관보에 사면 허가 결정을 발표해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행위에 관한 사면 허가를 촉진한다.

사면 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선포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규정 양식에 따라 본위원회에 사면 허가를 신청한다. 사면 소위 청문회는 대법원 판사를 의장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공개 청문회가 인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기본 인권에 위배될 경우 의장과 소위의 판단에 따라 비공식 채널로 개최된다. 절차는 서로 다른 양식을 펼 수 있다. 일단 신청서가 소위에 접수되면 소위는 사면 요구가 적절할 경우나 청문회에 소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나 신청자의 가해 행위나 목인 행위가 심한 인권 침해 사례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를 소환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로 사면을 허가하고 차후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위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는 신청자의 사례를 듣고 심의하게 될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다. 그 후 해당 신청 사례를 검토하여 사면을 허가하거나 불허한다. 사면 조건에 명기된 규정 가운데 하나는 신청자가 모든 연관 사실을 사실을 완전히 폭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기준으로 사면 판결을 내린다.

- ▶ 인권 침해 행위, 목인 행위, 가해 행위를 자행한 사람의 동기.
- ▶ 인권 침해 행위, 목인 행위, 가해 행위가 발생한 정황, 특히 그러한 침해, 목인, 가해 행위가 정치적 봉기, 혼란, 사태나 그에 대한 대응 과정으로 혹은 그 일부로 자행되었는가의 여부.
- ▶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의 정도를 포함하여 그러한 침해, 목인, 가해 행위의 법적, 사실적 성격.
- ▶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의 대상이나 목적, 특히 그러한 침해, 목인, 가해 행위가 일차적으로 정적이나 국가 재산이나 집단을 겨냥한 것인지 개인 재산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인지의 여부.
- ▶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가 조직, 기구, 해방 운동을 통해 혹은 그러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조직원, 대리인, 혹은 지지자인 조직의 명령이나 조직의 대신으로, 혹은 조직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 ▶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와 그 행위가 겨냥한 정치적 목표와의 관련 여부, 특히 그러한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와 정치적 목표와의 관련성의 직접성, 인접성, 비례 정도.

이 내용은 법안 제(2)조 소항목에 언급된 자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조에 언급된 사람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 개인적 이익을 동기로 지닌 자: 국가나 이전 정부, 정치 조직, 혹은 해방 운동의 정보 제공자로서 금품이나 금품과 유사한 뇌물을 받은 사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목인, 가해 행위는 해당자가 그의 정보의 댓가로 금품이나 금품과 유사한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희생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악의로 범죄를 자행한 자.

5.4.3.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Committee of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는 :

- ▶ 본위원회와 인권 침해 소위원회, 사면 소위원회에 제기된 문제들을 심의한다.
- ▶ 희생자의 신원, 종적, 행방에 관한 증거 자료와 희생자가 당한 위해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는:

- ▶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에 관하여 긴급 잠정 조치를 권고한다.
- ▶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의 창출과 인권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권고한다.
- ▶ 본위원회에 소위 활동과 관련된 잠정 보고서를 준비, 제출한다.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소위의 활동, 조사 내용, 건의 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는 희생자의 종말이나 행방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희생자가 당한 폭력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며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을 건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 5.5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활동 수행을 위해 특정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권한은 조사와 지방 감사, 청문회 개최, 연구원 임명, 증거 제공이나 문건 제작 혹은 기타 사항에 요구되는 인물의 소환권과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에 의거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권이 포함된다.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환된 사람은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를 지닌다. 자신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답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답변자 자신을 고발하는 답변, 문건, 그 밖의 증거는 법정에서 답변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5.6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 기한

위원회는 설립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수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 하에 6개월 이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활동을 완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소위원회 활동이 완결되면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최종 보고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판보로 발행되어 전국에 배포, 남아공화국의 모든 국민에게 알려진다.

### 5.7. 진실과 화해 위원회 운영기금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에 맞는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및 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 기금을 건립한다. 대통령 기금은 본 기금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서 조달하는 돈과 본 기금에 기증되는 돈과 기타 조달원을 통해 기금에 모아지는 모든 돈으로 운영된다.

본 기금을 통해 대통령이 규정한 배상책에 따라 각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이 지불된다.

## 6. 결론 : 이후 연구 과제

우리는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후 연구 과제를 설정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보편적인 과거 청산 방식의 개발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과거 청산 방식의 개발이라는 수준에 집중해야 한다.

전자의 과제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아공의 사면 내용과 기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별첨 자료 참조) ② 개인 이외 기관, 당국, 사법부, 경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와 처리 ③ 직접적 정치 희생자 이외에 아파르트헤이트의 희생자라 주장하는 소의 계층의 보상 요구 ④ 국가재건 문제와 연관해서 TRC의 위상에 대하여 ⑤ TRC에 제기된 비판들(·피해자측, ·가해자측, ·형평성의 문제, ·재정 문제)을 들을 수 있다. 또 ⑥ 제3세계의 일체의 불평등에 기초한 억압 구조(군, 재벌, 왕조, 사회 관습 등)를 극복하는 일반이론의 개발

후자의 과제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⑦ TRC 활동이 사회 통합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얼마나 유효한가의



문제, ⑧ TRC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들의 대립과 활동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⑨ 청산해야 할 시기에 대한 문제(봉건 왕조 시대부터/일제 시대부터/해방 정국부터/박정희 정권부터/전노 정권부터) ⑩ 과거 청산의 대상을 구체적인 사안(즉 발포자 처벌/군사 구테타 세력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으면 당시의 총체적인 상황(예로 5공과 6공을 총체적으로 부정하여, 한일 기본 조약이나 한미 행정 협정 등 일체의 반민중적, 매관적 법률과 조약 등을 포함)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 과제를 위해서 연구소내에 남아공 화해 위원회 연구자 모임을 상설화하고, 타 단체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98년 6월까지 2단계부터 사회적 실천 측면과 이론 연구 작업을 병행하고 종결 단계인 3단계(98년 12월까지)에서는 학문적 축적과 사회적 실천 측면을 분리 진행할 예정이다.

1995년 국가통찰과 화해 추진법 25장 161회 회거한 성명서(1995년 법률 34조)

1997년 8월 20일 1995년 법률 34조 30항 (1)의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이 행해짐

(a) Maxon Phakamisa (1964-11-18 출생)와 Two-Boy Jack (1954-04-10), 1991년 7월 22일 The Cape 지역에서 10 차례의 살인 미수와 2 차례의 불법 무기 및 탄약 소유에 대하여.

(b) Patrick Mzingisi Nchuruzani (1964-04-15 출생), The Cape 지역에서 1991년 10월 13일과 27일 각각 Nchimphwe Ntekiso와 Eric Kekarwana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하여.

(c) Thami Robert Btobani (1973-09-17 출생), 1992년 9월 25일 불법 무기 및 탄약 소유와 교도소 관리 문제 위반에 대하여



별첨 : 진실과 화해 위원회 사면 소위원회 성명서와 보도자료

\*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사면 소위원회에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면 신청자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사면 여부를 판결하여 사건별 구체적인 성명서와 함께 보도자료를 낸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 사면 소위원회 성명서

No. R. 36

1995년 국가통합과 화해 촉진법 20항 (6)에 의거한 성명서(1995년 법률 34조)

1997년 5월 20일, 1995년 법률 34조 20항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면이 행해짐 :

- (a) Maxim Phakamisa (1954-11-18 출생)와 Two-Boy Jack (1954-04-10), 1991년 7월 22일 The Cape 지역에서 10 차례의 살인 미수와 2 차례의 불법 화기 및 탄약 소유에 대하여.
- (b) Patrick Mzingisi Ndlumbini (1964-04-15 출생), The Cape 지역에서 1991년 10월 13일과 27일 각각 Ndimphiwe Ntekiso와 Eric Xekerwana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하여.
- (c) Thami Robert Btsobani (1973-09-17 출생), 1992년 9월 25일 불법 화기 및 탄약 소유와 교도소 관리 체제 위반에 대하여



## 사면 결정에 관한 보도 자료

진실과 화해 위원회 제공

(다음 자료는 사면 신청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신속히 필요로 하는 저널리스트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 문서가 아님을 밝혀둔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 소속 사면 소위는 1990년 10월 더반 근처에서 버스를 공격하여 7명의 승객을 사망케 한 AWB와 OB 지도자의 사면을 거부했다.

사면 소위는 이 공격에 가담한 AWB와 OB 추종자 2인에게 사면을 허가했다. 그러나 TRC 의사록에 제출된 첫 번째 토론 내용에서 소수측 의견으로 한 위원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3명 모두에게 사면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 신청자들은 이전 AWB의 Richards Bay 지휘관이었던 51세의 David Petrus Botha와 Orde Boerevolk 하 부조직의 리더인 43세의 Adriaan Smuts와 33세의 Eugene Marais이다. 이들은 dwaMashu 근처 버스 공격으로 1992년 12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감형이 행해져 Botha는 징역 30년, Smuts와 Marais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PAC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더반 해안의 행인들을 공격한 일에 대한 복수로 1990년 10월 9일 아침 일찍 버스를 공격했다. 세 명은 7차례의 살인 행위와 27 차례의 살인 미수 행위로 기소되었다.

소위의 결정은 의장인 Hassen Mall 판사와 부의장 Andrew Wilson 판사, Bernard Ngoepe 판사와 Adv. Chris de Jager SC에 의해 서명되었다.

소위의 다수는 버스 공격이 정치적 동기와의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Botha의 경우 범행 수행의 명령을 받은 증거가 없으며 이 공격이 AWB나 OB의 승인 하에 자행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Smuts와 Marais는 Botha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